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규정집 규정

[2024년 2월 28일 개정]

목 차

01.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규약	1
02. 가맹단체 운영 규정	17
03. 가맹 및 탈퇴 규정	31
04. 관리단체 운영 규정	39
05. 지회 운영 규정	45
06.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53
07. 상벌위원회 운영 규정	59
08.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67
09. 전문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73
10. 학교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79
11.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	83
12. 위원회 등 실비변상 규정	89
13. 체육유공자 포상금 지급 규정	93
14.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규정	99

15. 대회개최 · 참가 보조금 지원 규정	109
16. 인사 규정	119
17. 복무 규정	143
18. 보수 규정	169
19. 회계 규정	197
20. 물품관리 규정	217
21. 여비 규정	237
22. 문서관리 규정	245
23.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55
24.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293
25. 차량운영 관리 규정	327
26. 실업팀 운영 규정	347
27. 기부금품 관리 규정	365

위원회 등 실비변상 규정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위원회 등 실비변상 규정

제정 2015. 09. 22.

개정 2021. 11.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 이사 및 감사의 수당과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당”이란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에 지급하는 댓가를 말한다.
2. “여비”란 근무지 또는 거주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숙박비·식비를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규정은 장애인체육회 이사, 감사, 및 법령, 규약 또는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과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규약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수당 등) ① 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이 아닌 이사, 감사 및 위원이 이사회 및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인체육회 소속 직원이 아닌 이사, 감사 및 위원이 미리 안전을 배부 받아 검토하고 참석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전별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개최하는 공식회의에 참석하는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 및 읍·면·동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참석수당은 기본료 7만원을 지급하고 2시간을 초과할 경우 3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 장애인체육회 이사, 감사 및 위원이 회장의 명령,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체육회 여비규정 팀장 직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9.>

보 칙

제1조(규정 이외의 사항) 위원과 실비변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부 칙(2015. 9.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